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. 11. 16 선고 2016가단316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0. 12.

판결 선고 2016. 11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김천시 C 대 519㎡ 중 별지 도면 표시㉠, ㉡, ㉢, ㉣, ㉤, ㉥, ㉦, ㉧, ㉨, ㉩, ㉪, ㉫, ㉬, ㉭, ㉮, ㉯, ㊱, ㊲, ㊳, ㊴, ㊵, ㊶, ㊷, ㊸, ㊹, ㊺, ㊻, ㊼, ㊽, ㊾, ㊿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.85㎡² 지상 담장 및 부속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부분 8.85㎡²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김천시 C 대 519㎡'는 원고 소유이고, 위 토지에 연접한 김천시 D 대 812㎡'는 피고 소유이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김천시 C 대 51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, ㉥, ㉦, ㉧, ㉨, ㉩, ㉪, ㉫, ㉬, ㉭, ㉮, ㉯, ㉰, ㉱, ㉲, ㉳, ㉴, ㉵, ㉶, ㉷, ㉸, ㉹, ㉺, ㉻, ㉼, ㉽, ㉾, ㊀, ㊁, ㊂, ㊃, ㊄, ㊅, ㊆, ㊇, ㊈, ㊉, ㊊, ㊋, ㊌, ㊍, ㊎, ㊏, ㊐, ㊑, ㊒, ㊓, ㊔, ㊕, ㊖, ㊗, ㊘, ㊙, ㊚, ㊛, ㊜, ㊝, ㊞, ㊟, ㊠, ㊡, ㊢, ㊣, ㊤, ㊥, ㊦, ㊧, ㊨, ㊩, ㊪, ㊫, ㊬, ㊭, ㊮, ㊯, ㊰, ㊱, ㊲, ㊳, ㊴, ㊵, ㊶, ㊷, ㊸, ㊹, ㊺, ㊻, ㊼, ㊽, ㊾, ㊿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.85㎡ 지상에 담장 및 부속사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위 건물부분의 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,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원근

별지